

# 장애인(중증) 취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

(사)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(이하 ‘GAFIC’이라 한다.)와 (주)제이민(이하 ‘제이민’이라 한다.)은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(중증)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장애인(중증)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취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정의)

‘장애인’이란 ‘장애인복지법’ 제2조에 따라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‘중증장애인’은 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’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## 제3조 (협약의 원칙)

‘GAFIC’과 ‘제이민’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.

## 제4조 (협약내용 및 기관역할)

협약기관은 장애인 훈련생의 업무교육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에 상호 협조한다.